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77
----------	------

2025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5년 5월 26일
- 상정일자 :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5년 6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대우 총무과장)

1. 제안이유

-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운영 개요

운영방식	정 원	교직원	보육실	예산소요액	본예산 편성액	개원시기
위탁	60명	15명 (예정)	6실	10억원 (1년)	6억 5천만원 (1년)	2026년 중
7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중	놀이터 면적 (212.22㎡) 기준에 의한 산출	·원장 : 1명 ·교사 : 12명 ·조리원 : 1명 ·사무원 : 1명	0세 ~ 5세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 (1년 기준)	·교육청 부담: 65% ·사업주 부담: 35%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2) 추진 필요성

-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년(2026년 ~ 2028년)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예: 개원 시기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준용
-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공모 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선정

바. 예산 규모

-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예상) : 10억원 내외(1년)
-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6억 5천만원 내외(1년)

어린이집명	구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 타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연간 운영비 합계(100%)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민간위탁 지원금액(65%)	357,500	65,000	97,500	32,500	97,500	-	650,000

3. 참고사항

가.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별첨]

나.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동의안은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77호로 제출되어 2025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직장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영유아보육법」 제14조¹⁾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²⁾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신청사 건립 시 직장어린이집을 지상 2층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6년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³⁾ 및 「민간위탁에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3)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② (생략)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한 조례」 제4조⁴⁾에 따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각호에 정한 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성요건에 따를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소관 사무이며, 이는 시민의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 직원의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 사무라 할 것입니다.
- 더욱이 보육사무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운영 전반을 수탁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무라 할 것인바,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⁵⁾에 따르면,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 형태에 따른 비교 분석을 거쳤으며, 인건비 규모, 이용 대상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또한 검토한 바 있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생략

5)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① 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당 사무에 종사한 기존 인력의 축소가 예상될 경우 해당 인력관계 부서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표-3] 직영 및 위탁 운영시 인건비 현황⁶⁾

구분	원장(1명)	보육교사(12명)	실무사(1명)	조리원(1명)	합계	비고
위탁	44,187천원	451,488천원	37,624천원	31,711천원	565,010천원	20호봉 기준
직영	51,606천원	534,468천원	44,539천원	38,331천원	668,944천원	30호봉 기준

- 또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유보통합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3법⁷⁾’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던 만 3세미만의 보육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사무는 운영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의 전문적인 보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바,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유보통합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⁸⁾

이에 따라 서울에서도 유치원 2개 기관, 어린이집 4개 기관이 교육부의 영유아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팀 보고자료(2025.6.12.).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필요성 보고.

7)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205079, 제안일자: 2024.10.30.)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05081, 제안일자: 2024.10.30.).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2205080, 제안일자: 2024.10.30.).

8) 교육부 보도자료(2024.8.20.). 유통합 체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교육부의 영유아 시범학교의 모델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유보통합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77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나.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 운영 개요

운영방식	정 원	교직원	보육실	예산소요액	본예산 편성액	개원시기
위탁	60명	15명 (예정)	6실	10억원 (1년)	6억 5천만원 (1년)	2026년 중
7개 시도교육청 위탁 운영 중	놀이터 면적 (212.22㎡) 기준에 의한 산출	· 원장 : 1명 · 교사 : 12명 · 조리원 : 1명 · 사무원 : 1명	0세 ~ 5세	인건비,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 (1년 기준)	· 교육청 부담: 65% · 사업주 부담: 35%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추진 필요성

- 신청사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운영체계 구축 필요
- 민간 위탁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년(2026년 ~ 2028년)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예: 개원 시기 등)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준용
- 수탁기간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공모 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선정

바. 예산 규모

-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예상) : 10억원 내외(1년)
-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6억 5천만원 내외(1년)

어린이집명	구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연간 운영비 합계(100%)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민간위탁 지원금액(65%)	357,500	65,000	97,500	32,500	97,500	-	650,000

3. 참고사항

가.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별첨]

나.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4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신청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총무팀 / 2025. 5. 19. (월)】

I 배경 및 목적

- 우리 교육청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계획(총무과-14079, 2025. 5. 14.)[교육감 결재]

III 추진 방향

- 민간 위탁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 및 만족도 제고

IV 추진 개요

- 위탁 대상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	개원 시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신청사 부지 내	527.71㎡ (지상 2층)	60명	2026년 중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6년 ~ 2028년)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 원아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교직원 임면, 시설물 관리 등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공개경쟁

V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 법인·단체 : 어린이집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 공통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원장으로 채용[법인·단체는 원장을 채용 또는 내정(지역 유경험자 우대)하여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갖춘 자(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 신청 제외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를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VI

위탁업체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지원 개요

- 위탁 지원비 : 어린이집 연간 총 운영비의 65% 이상 지원
-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예상) : 10억원 내외

○ 우리 교육청 민간 위탁 지원비(예상) : 6억 5천만원 내외(1년)

어린이집명	구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가칭)	연간 운영비 합계(100%)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민간위탁 지원금액(65%)	357,500	65,000	97,500	32,500	97,500	-	650,000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 내역 변동 가능

VII 세부 추진 일정

□ 개원 시기별 추진 일정

시기	개원 시기별 추진 내역		비고
	1안(7월 개원)	2안(9월 개원)	
2025.5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본계획 수립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본계획 수립	
2025.6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동의	5월 의안 제출
2025.8월	2026년도 본예산 제출	2026년도 본예산 제출	
2025.12월	직장어린이집 수요 조사	직장어린이집 수요 조사	직원 대상
2026. 1월	어린이집 위탁 사업자 선정		
2026. 3월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어린이집 위탁 사업자 선정	
2026. 5월	원아 모집 공고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2026. 6월		원아 모집 공고	
2026. 7월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2026. 9월		어린이집 개원 및 운영	

※ 해당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VIII 기대 효과

□ 보육의 전문성 강화 및 안정적 운영 확보

- 보육 전문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인력 채용·운영 등 관리 전반에 있어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 직원 복지 향상 및 조직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 직장 내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한 조직 만족도 증대

붙임 1. 참고법령 1부

2. 참고자료(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 1부. 끝.

붙임 1 참고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참고 자료

□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예산 편성 내역

(2025. 4월 현재, 아이사랑 보육포탈 공개자료)

연번	어린이집명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재산 조성비	기타	계
1	국회제3어린이집	1,464,530	71,701	197,680	115,350	20,000	32,321	1,901,582
2	국방부청사어린이집	2,307,879	356,383	551,434	55	133,600	40,902	3,390,253
3	아모레퍼시픽 서울어린이집	954,580	344,405	169,498	87,222	1,000	29,500	1,586,205
4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788,371	334,321	375,250	108,028	160,000	134,030	2,900,000
5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491,939	71,918	144,656	-	15,395	3,099	727,007
6	전라남도교육청 꿈자람어린이집	546,118	83,113	157,990	-	26,838	863	814,922
7	경북교육청어린이집	516,320	36,392	59,472	23,002	1,200	521	636,907
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550,000	100,000	150,000	50,000	150,000	-	1,000,000

□ 타 기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금 편성 내역

(2025. 4월 현재, 아이사랑 보육포탈 공개자료)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현원	연간운영비 (백만원)	민간위탁경비 지원금 (백만원)	지원비율
1	국회제3어린이집	118	91	1,901	1,140	60%
2	국방부청사어린이집	220	154	3,390	비공개	비공개
3	아모레퍼시픽 서울어린이집	94	79	1,586	951	60%
4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195	138	2,900	1,943	67%
5	충청남도교육청어린이집	60	41	727	400	55%
6	전라남도교육청 꿈자람어린이집	54	51	814	540	67%
7	경북교육청어린이집	50	35	636	350	55%
8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가칭)	60	-	1,000(예정)	650(예정)	65%